**세계인쇄박물관협회 정관**

**배경**

1. 2016년 직지코리아 국제 페스티벌 기간 중, 세계인쇄박물관 회의가 개최되었다.
2. 이듬해, 서명인(워킹그룹)들은 청주에 초대되어 세계 인쇄 문화, 역사, 유산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기구의 창립과 그 규정을 만들기 위해 협력했다.
3. 이 규정에 기반하여, 워킹그룹은 “세계인쇄박물관협회(‘협회’)”를 창립하고자 한다.
4. 협회는 협회 활동과 목적을 지지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에 열려있으며, 회원들이 선출한 이사회가 협회를 관리한다.
5. 협회는 국제적인 인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협력과 교류의 장이 되며, 인쇄 문화, 역사, 유산과 관련된 국제적 행사를 기획하고 후원한다.
6. 협회는 때때로 조직 개편과 구성을 통해 국제적 인쇄 유산 공동체의 목적과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1장 총칙**

**제1조 협회 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세계인쇄박물관협회(‘협회’)” 로 한다.

**제2조 소재지**

협회의 소재지는 청주고인쇄박물관(한국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으로 한다. 협회의 소재지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변경되거나 개정될 수 있다.

**제3조 목적**

협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널리 알리고 지지하고자 한다:

1. 인쇄박물관들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들의 발전;
2. 관련 지식의 전파와 보존을 통한 인쇄 문화, 역사, 유산의 발전과 지지;
3. 박물관, 관련 기관, 전문가 그리고 지지자들간의 협력과 교류.

**제 4조 사업**

협회는 협회목적과 관련하여 아래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1. 인쇄 문화, 역사, 유산과 관련한 학술, 교육, 문화 프로젝트 추진 및 후원;
2. 박물관, 관련 기관, 전문가 그리고 지지자들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협력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 협력;
3. 독자적으로, 또는 박물관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출판물들을 간행;
4. 인쇄 문화, 역사, 유산과 관련한 국제 행사의 실행과 후원;
5. 그 외 협회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 5조 자산과 부채 부재**

협회는 금융 자산 및 은행 계좌 보유, 영리활동 및 부채를 수반하는 활동을 진행하지 않으며 어떠한 직원이나 회원도 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제 6조 개정**

협회 목적을 보다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 협회는 필요할 때 다음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1. 15조 2항에 따른 협회 규정 개정(예를 들어 5항의 자산과 부채 소유 금지 조항관련);
2. 특정 사법권에 의한 협회의 법인화;
3.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협회 지역사무소 설립;
4. 15조 3항에 따른 협회의 해산시 그 후계 기관의 설립.

**제 2장 회원**

**제 7조 회원 가입 및 승인**

7.1. 협회의 활동이나 그 목적을 지지하는 모든 기관 또는 개인은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사회는 회원 가입 절차(전자문서를 포함)를 규정할 수 있다.

7.2 이사회는 회원 가입 승인의 고유한 권한을 가진다.

**제 8조 회원 구분**

8.1. 정회원: 8조 2항에 의해 이사회의 특별한 결정이 없는 한 정회원으로 가입한다.

8.2. 특별회원: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 할 경우, 특정 기관이나 개인은 특별회원으로 구분된다. 특별회원은 정관에서 명시한 사항 이외에는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 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9.1. 모든 회원들은 총회 참석과 발언을 통해 협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9.2. 정회원 (특별회원은 제외)은 총회에서 안건을 제시하고 투표할 수 있다.

9.3. 정회원 (특별회원은 제외)은 이사회 피선거권을 가진다.

9.4. 회원이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구성원과 대표자를 통해서 9조1항과 3항의 권리를 행사한다.

9.5. 모든 회원들은 협회 정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부칙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10조 회원탈퇴와 제명**

10.1. 회원은 언제든 이사회에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10.2. 회원이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9조 5항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는 고유 권한으로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총회**

**제 11조 총회의 구성**

모든 회원들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투표권과 발의권은 정회원에게만 한정된다. 총회의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부칙조항에 우선한다.

**제 12 조 총회의 개최**

12.1. 총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정기총회와 특별총회가 있다.

12.2. 정기총회는 2년마다 한번씩 개최되며 초대회의는 2020년에 개최된다.

12.3. 특별총회는 제 13조에 의해 개최된다.

12.4 제 13조에 의해 이사회는 안건,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것인지 또는 (가능할 경우)온라인으로 진행할 것인지, 일시 등 총회와 관련된 모든 방식을 결정하고 회원들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개최 최소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제 13조 특별총회**

이사회의 과반 혹은 전체회원의 3분의1 (단, 최소 20인 이상) 이상이 결의서를 날인하여 제출한 경우, 이사회는 이러한 요구가 있은 지 60일 이내에 특별총회를 개최하여 결의서의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

**제 14조 의결정족수**

14.1. 총회는 전체 회원의 3분의 1 이상(직접참석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2. 각 회원은 총회 이전 의장에게 서류를 통해 투표권을 위임할 수 있다.

14.3 회원 스스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결할 때 그 회원은 의결 정족수에서 제외하고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15조 총회 의결사항**

회원들은 총회를 통해 다음 사항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5.1. 이사회 임원의 선출 및 해임

15.2. 정관변경

15.3. 협회의 해산

15.4.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 4장 이사회**

**제 16조 이사회의 구성**

16.1. 이사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총무 및 다수의 이사들을 포함하여 가능한 고른 지역적 분포를 대표하는 최대 10인으로 구성한다.

16.2 이사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중도 해임되지 않는 한 차기 총회에서 임기가 종료된다. 이사회는 연임 가능하다.

16.3 워킹그룹 멤버는 초대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며, 중도 해임되지 않는 한 첫 총회에서 임기가 종료된다. 이 기간 동안 초대 이사회는 협회의 회원 기반과 관리 능력을 키우고 세계 인쇄 유산 커뮤니티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16.4 여건에 따라서, 이사회는 16조 1항에 규정된 정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정회원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제 17조 이사회 소집**

17.1. 이사회는 최소 1년에 한번, 그리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여기거나 제 18조와 관련해 소집한다.

17.2. 제 18조에 의해 의장은 안건,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것인지 또는 (가능할 경우)온라인으로 진행할 것인지, 일시 등 이사회와 관련된 모든 방식을 결정하고 이사회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개최 최소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제 18조 특별 이사회**

이사회의 과반이 결의서를 날인하여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 의장은 이러한 요구가 있은지 60일 이내에 특별 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의서의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

**제 19 조 의결정족수**

19.1.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직접참석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19.3 이사 스스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결할 때 그 이사는 의결 정족수에서 제외하고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20조 이사회를 대신하는 결의안**

20.1 이사회 과반이 날인한 결의안(전자문서 포함)은 이사회 결의를 통과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20.2. 중대하지 않거나 급박한 사안일 경우, 의장이 날인한 결의안(전자문서 포함)은 총회 결정을 통과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러한 결의안은 차기 이사회에서 재가된다.

**제 21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제 15조에 명시된 총회 의결사항을 제외하고 협회 활동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제 22조 부칙**

이사회는 협회의 운영과 행정상 필요할 경우 부칙을 채택할 수 있다. 모든 부칙은 협회 정관에 부합해야 하며 상충되는 경우 정관이 우선한다.

**제 5장 사무국**

**제 23조 사무국**

23.1. 이사회는 필요할 때 사무국에 협회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23.2. 이사회는 언제든지 사무국에 위임한 권리를 변경, 취소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다.

23.3. 협회의 초대 사무국은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에 위치한 청주 고인쇄박물관으로 한다.

**2018년 8월 30일 초대 이사회에 선임된 워킹그룹의 임원들이 서명함:**

**Dan TAIT-JAMIESON**

**Alan MARSHALL**

**Afreen SIDDIQUI**

**Guy HUTSEBAUT**

**Ahmed MANSOUR**

**Stefan SOLTEK**

**Frédéric TERRIER**

**Yao Yu SUN**